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지침

전부개정 2022. 2. 11. 일부개정 2026. 3.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칙 제34조, 학칙에 관한 시행세칙 제18조 6호 및 교육부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현장실습학기제(이하 '현장실습'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구분) 현장실습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표준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 학교와 실습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한다.

제3조(운영원칙) ① 현장실습은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②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현장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③ 현장실습은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제4조(주관부서 및 업무) ① 현장실습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실습 교과목 편성 및 운영
2. 실습기관 모집 및 관리
3. 실습생 모집 및 교육 관리
4. 현장실습 수행 점검 및 환류
5. 실습기관과의 업무 협의

제 2 장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제5조(실습유형) ① 실습기관은 다음 각 호의 형태로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다.

1. 학교 주도형: 학교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실습기관을 직접 발굴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2. 실습기관 주도형: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할 학교를 지정하거나 모집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실습기간 및 실습지원비 등의 여건·지원 사항에 있어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실습기관 주도형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인 경우만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교육시간)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의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영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체 실습시간의 일정 비율 범위에서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한다.

1. 교육시간은 실습기관에서 부여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의 시간을 의미한다.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25 이하인 경우로 한다.
3.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는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를 넘는 경우로 한다.

제7조(실습시간) ①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는 주 또는 월 단위로 편성하며, 최소 1개월 이상으로 운영한다.

1.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를 기반으로 1주간 5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또는 6일인 경우에 한하여 1주간 4일 또는 6일을 기준으로 연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가 1주간 4일 미만이거나, 실습기관의 근무제 형태와 다르게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운영한다. 다만, 실습기관의 전일제 기준이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일제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운영하되,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실습기관이 학생의 동의를 받아 1주간 최대 5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의 야간에는 운영할 수 없다.
- ③ 실습기관에서는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보장한다.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인정한다.
- ④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에서 학교와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신청자격) ① 현장실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2. 편입생의 경우 최소 1학기 성적 완료된 자
3. 우리 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해당 현장실습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1. 정규학위과정 외의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등
2. 정규학기 휴학자(계절학기 제외), 졸업유보자 등

제9조(실습생선발) ① 현장실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센터장 및 학부(과)장은 학교 및 현장실습기관의 선발기준에 의거 실습 분야와 실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습생을 선발한다.
- ③ 현장실습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한다.

제 3 장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제10조(교육과정) ① 현장실습 정규학기, 계절학기 운영에 따른 교과목을 별표 1과 같이 편성한다.

- ② 정규학기현장실습은 15학점 이내, 계절학기현장실습은 12학점 이내로 참가할 수 있다.
- ③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최대 전공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으며, 전공 인정은 현장실습 시작 전 학과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허용한다.
- ④ 정규학기현장실습, 계절학기현장실습을 합하여 재학 중 최대 27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 시 대체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11조(교과목 개설) ① 현장실습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교육담당자 지정 및 현장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점검계획
5. 출결 및 평가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기타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되 월급제 기준에 따라 운영할 경우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현장실습 교과목은 담당교수의 수업인정시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수강신청) ① 현장실습 과목은 정규학기 또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 인정 교과목 외 수강은 이러닝 강의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 센터에서는 실습생의 수강신청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 내역을 교무팀에 제출한다.

제13조(출석관리) ① 학교 및 실습기관에서는 공휴일, 유급휴일 및 실습기관의 사정 등에 의한 현장실습 미 실시 일정을 확인하여, 실제 학생이 출석하여 현장실습이 실시된 일자가 관리될 수 있도록 출석관리를 한다.

②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이 실제 계획된 일정으로 연속적으로 운영되는지 실습기관의 출석관리 사항을 점검한다.

③ 공휴일과 1주 기준 1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은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제14조(성적평가) ① 현장실습 과목은 센터장이 실습생의 연수결과 증빙서류, 실습기관의 출근부 및 평가표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② 현장실습의 성적은 이수 P(Pass), 미이수 NP(Non-Pass)로 평가하고, 평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졸업예정자의 마지막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여는 졸업사정 일정을 고려하여 3학점만 인정한다.

④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현장실습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 4 장 실습기관 협약

제15조(실습기관) ① 실습기관은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출연)기관
 2. 기타 총장이 현장실습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② 현장실습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계획서를 제출한다.

1. 실습기관 정보
2. 현장실습 운영 시간 및 기간
3. 현장실습 대상 전공(학과), 계열, 인원 및 학년
4. 현장실습 직무내용, 직무교육(지도) 및 세부 운영계획
5. 실습지원비 등 학생 지원 사항
6.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에 대한 사항 등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실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 현장실습기관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여,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실습한 경우
2. 현장실습 수행 이전에 취업된 학생이 해당 근로를 현장실습으로 수행하는 경우
3. 학부(과) 특성상 (전문)자격 취득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제16조(협약사항) ① 현장실습 시작 전 학교, 학생, 실습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실습기관과의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근무)계획
2. 현장실습기간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실습생에 대한 수혜 조건(실습수당 및 후생복지 등)

4. 기타 효과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실습기관, 학교 및 학생의 사정에 따라 협약 변경 및 해지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학생들의 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 임금액을 기준으로 교육부 운영규정 관련 실습지원비 조항을 준용한다.

③ 학교는 대학지원금, 참여기업 관리비 등의 운영 경비를 편성할 수 있다.

제18조(기관점검) 지도교수 또는 센터 담당자는 실습기관의 근무 환경 및 여건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애로점 및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5 장 실습생 의무

제19조(준수사항) 실습생은 현장실습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종료 후 현장실습 결과보고서를 센터로 제출한다.
2. 우리 대학교 학칙, 현장실습기관의 규정 및 안전관리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을 통하여 알게 된 실습기관의 기밀은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현장실습 도중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20조(조치사항)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현장실습기관 내규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무단 결근자
2. 고의적으로 현장실습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고의적으로 현장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4.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5.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 자

제 6 장 학생보호

제21조(학생보호) ①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에서는 현장실습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현장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⑤ 현장실습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현장실습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현장실습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제22조(국가재난 등에 따른 학사관리) ① 현장실습 운영 중 국가재난 및 실습기관의 과실 등의 사유로 실습 중단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현장실습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현장실습 지속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시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3. 복교에 따른 중단 시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대체교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일시 중단 및 복교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7 장 현장실습 운영위원회

제23조(위원회 구성) ① 현장실습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 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결원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현장실습 운영규정 심의
2.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주요 정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실습기관 평가
5. 기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8 장 보칙

제25조(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교 학칙 및 운영부서 세부 지침, 실습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등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기타 일반 사항은 교육부 현장실습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본 지침 시행학기 이전의 현장실습은 기존 현장실습 운영지침에 따른다.
3. (양식) 현장실습 관련 제반 양식은 본 규정의 붙임 양식을 기본으로 하되, 학교와 실습기관 간의 상호협의를 통해 수정사용 가능하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편성표

표준현장실습학기제 편성상세				
과정	교과목명	인정학점	실습요건	이수구분
정규학기	정규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1	9	15주 이상	전공선택*
	정규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2	6		일반선택
계절학기-1	계절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1	3	8주 이상	전공선택*
	계절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2	3		일반선택
계절학기-2	계절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3	3	8주 이상	전공선택*
	계절학기표준현장실습학기제4	3		일반선택

자율현장실습학기제 편성상세				
과정	교과목명	인정학점	실습요건	이수구분
정규학기	정규학기자율현장실습학기제1	9	15주 이상	전공선택*
	정규학기자율현장실습학기제2	6		일반선택
계절학기-1	계절학기자율현장실습학기제1	3	8주 이상	전공선택*
	계절학기자율현장실습학기제2	3		일반선택
계절학기-2	계절학기자율현장실습학기제3	3	8주 이상	전공선택*
	계절학기자율현장실습학기제4	3		일반선택

*주전공이 아닌 복수전공으로도 학점 인정이 가능

1. 실습기간 1주 단위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휴계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현장실습 교과목으로 최대 전공 15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3. 단, 계절학기현장실습이 4주 이상 8주미만으로 계획되어 운영될 경우, 하나의 교과목(3학점)만 인정한다. (이 때 실습요건은 4주 이상으로 한다.)